

의안번호	2217130
의 퇴 인	김종민 의원
회 답 일	2026. 7. 29.
추계번호	26A12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항 및 제2항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1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기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안 부칙 제2조2)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개정안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시 자동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6년 5월말 기준 9,396기로, 한국전력과 민간 등을 포함한 국내 충전시설 총 53만 1,112기 중 1.8% 수준

[표 1] 운영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2026년 5월말 기준)

(단위: 기, %)

운영주체	규모	비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396	1.8
국가(기후에너지환경부)	640	1.6
지방자치단체	8,756	0.1
한국전력	11,484	2.2
민간 등 기타	510,232	96.1
합 계	631,112	1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안 부칙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개정안은 자동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계에 필요한 자동화 소방시설의 유형이나 설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며, 자동화 소방시설의 설치 장소 및 구조 등에 따라 설치필요 물량과 단가가 상이³⁾하여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이미 자동화 소방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각 시설의 자동화 소방시설 구비 현황과 개정안에 따른 설치 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

3) 다만, 참고로 서울시설공단이 2025년에 체결한 “잠실역 공영주차장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고정형) 시스템 구축” 용역의 계약 금액은 7,040만원이었으며, 이는 잠실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3면에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감시, 직수 제어, 급수시설 연동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임(자료: 나라장터 서울시설공단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R25BK01164221 - 000, ‘잠실역 공영주차장 상방향 직수장치(고정형) 시스템 구축’))